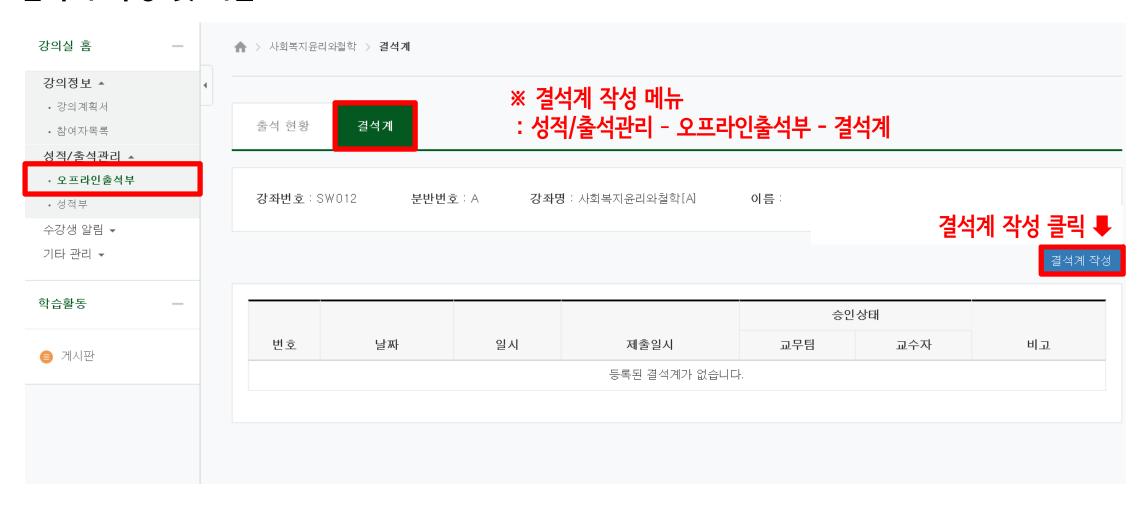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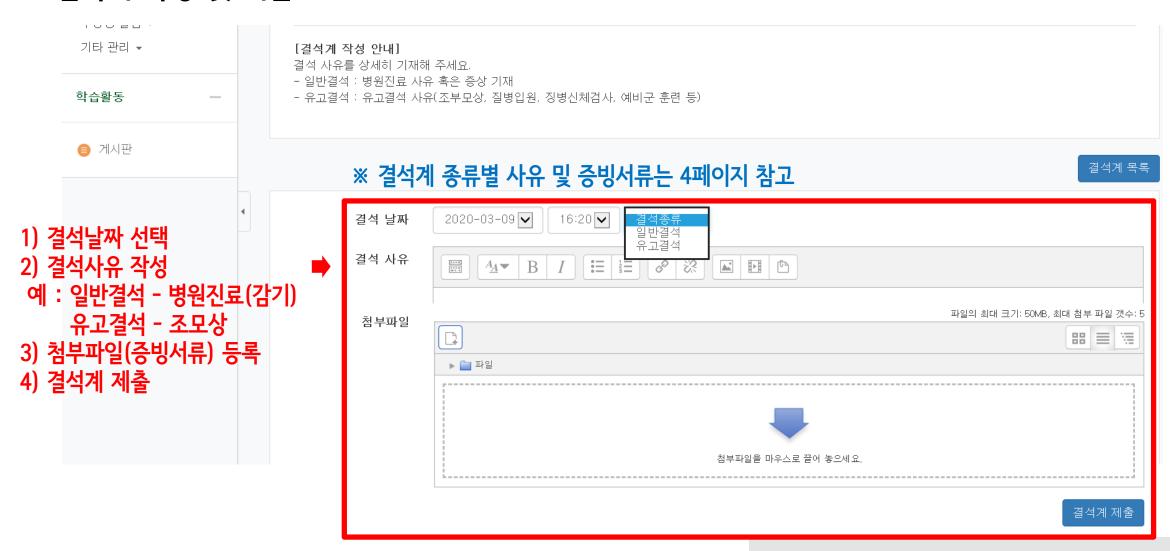
1. 결석계 작성 및 제출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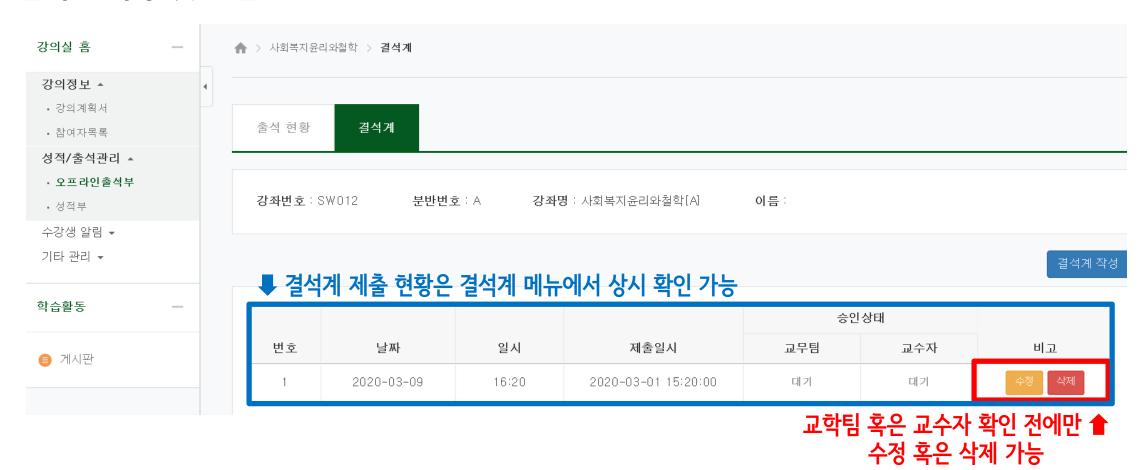
1. 결석계 작성 및 제출 ②



1. 결석계 작성 및 제출 ③



1. 결석계 작성 및 제출 ④



2. 결석계 종류별 사유 및 증빙서류

※ 관련 규정: 학사규정 제9조(결석인정범위)

※ 유고결석 : 해당 기간 출석한 것으로 인정

유고결석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혈족사망	부모·자녀·배우자	5일 사망진단서 3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조부모 형제자매		
본인질병	입원	해당기간 (최대3주)	입·퇴원확인서
	격리		진단서(전염성 및 격리일자 명시)
병무관계	신체검사	해당기간	참석확인서(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지원시험		
	예비군 및 민방위		
	전역예정자 조기복학	해당기간 (최대3주)	전역증
교육과정에 의한 실습		해당기간	교학처장 승인 서류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해당기간 (최대4주)	건강보험가입증명서
학교 공식행사		승인기간	교학처장 승인 서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		승인기간	교학처장 승인 서류

※ 일반결석 : 해당 기간 결석으로 처리되나 출석점수 감점여부는 교수 재량

일반결석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본인질병	진료	해당기간 (최대3주)	진료확인서

3. 코로나19 관련 결석계 사유 및 증빙서류

- 1) 자가격리 대상자: 자가격리 대상 확인 서류(격리통지서 등)
- ☞ 최근 14일 이내 해외 혹은 국내 집단발생 지역(시설) 방문자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경우
- ☞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경우
- 2) 의심 증상자: 의심 증상으로 진료받은 기록(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 37.5℃ 이상 발열이 2~3일간 계속되는 경우
- ☞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있는 경우